

업 무 보 고 사 항

□ 제 42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○ 제 42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6. 2. 16

(화순군의회 공고 1996 - 2호)

< 공 고 내 용 >

. 집회일시 : '96. 2. 26 (월) 10시

. 장 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제 41 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전 처리사항

○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,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. 집행기관 이송 : '96. 1. 17

. 공 포 일 : '96. 1. 20 (화순군조례 제1398호)

○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. 집행기관 이송 : '96. 1. 17

. 공 포 일 : '96. 1. 20 (화순군조례 제1396호)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. 집행기관 이송 : '96. 1. 17

. 공 포 일 : '96. 1. 20 (화순군조례 제1397호)

□ 각종 안전 제출 및 발의사항

○ 제 42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발의 - '96. 2. 15

. 발 의 자 : 양동북 의원 외 3명

. 회 기 : '96. 2. 26 ~ 3. 4 (8일간)
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 - '96. 2. 15

. 발 의 자 : 조영길 의원 외 3명

. 출석요구내용 : 별첨

○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.읍면정 추진계획 보고
요구의 건 - '96. 2. 23

. 발 의 자 : 김성인 의원 외 3명

. 주 문

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.읍면정 추진계획
보고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

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.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일정

보고시기	소 관 업 무	보 고 자
'96. 2. 26 (월) 10 : 00	경영정책실, 기획실, 문화공보실, 민원봉사실, 내무과, 재무과, 지적과, 민방위재난관리과	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
'96. 2. 27 (화) 10 : 00	사회복지과, 산업과, 산림과, 지역경제 과, 건설과, 도시과	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
'96. 2. 28 (수) 10 : 00	환경보호과, 농촌지도도, 보건소, 온천개발사업소, 위생환경사업소, 휴양림관리사업소	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
'96. 2. 29 (목) 10 : 00	화순읍, 한천면, 춘양면, 청풍면, 이양면	해당 읍면장
'96. 3. 2 (토) 10 : 00	능주면, 도곡면, 도암면, 이서면	해당 읍면장
'96. 3. 4 (월) 10 : 00	북면, 동북면, 남면, 동면	해당 읍면장

. 제안이유

-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'96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,
- 집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지적,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'96년도 업무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수립, 추진되도록 하면서
-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1 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한 '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부터 직접 듣고 조치내용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함.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 - '96. 1. 30

. 제안이유

-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화순군지방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
-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및 신설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(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대통령 제14825호 '95.12.14)

. 주요골자

-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(안 제7조 제2항 신설)
-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를 확대 조정함 (안 제18조 제1항)
- 공무원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2조 5호 및 제7호 신설)
-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3조 제5항 제5호 신설)
-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(안 제23조 제6항 신설)

. 제안이유

-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'96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,
- 집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지적,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'96년도 업무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수립, 추진되도록 하면서
-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1 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한 '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부터 직접 듣고 조치내용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함.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 - '96. 1. 30

. 제안이유

-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화순군지방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
-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및 신설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(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대통령 제14825호 '95.12.14)

. 주요골자

-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(안 제7조 제2항 신설)
-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를 확대 조정함 (안 제18조 제1항)
- 공무원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2조 5호 및 제7호 신설)
-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3조 제5항 제5호 신설)
-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(안 제23조 제6항 신설)

-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사항중에서 정치적 목적내용 신설 (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)

※ 총무위원회에 '96. 2. 29일까지 심사보고토록 회부 ('96. 2. 24)

○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- '96. 2. 16

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등에게 사회복지 차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코자 함

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

. 보철용 자동차 1급 ~ 5급에서 1급 ~ 6급까지 감면 확대

-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대

. 현행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하던 것을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까지 감면대상자에 포함

. 현행 본인명의로만 등록된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해서만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었으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
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

.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함.

-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

.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는 재산세, 종토세, 도시계획세 면제

-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 확대

. 현행 전용면적이 40㎡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하던 것을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

※ 총무위원회에 '96. 2. 29일까지 심사보고토록 회부 ('96. 2. 24)

○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- '96. 2. 16

. 제안이유

도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인 한천농악을 전승·발전시키고자 건립한 화순군 한천농악 전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. 주요골자

- 전수회관의 명칭과 위치 (제2조)

. 명 칭 - 화순군 한천농악 전수회관

. 위 치 -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616 - 3

- 수행업무 (제3조)

전수생에 대한 숙식등 편의제공, 생활지도, 농악관련 자료 전시·시연 및 기타 전수를 위한 사항

- 운 영 (제4조)

. 운영주체 - 화순군수 또는 한천농악대 (위탁운영)

. 위탁운영시 협약서 작성 및 협약서 내용 규정

. 필요시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

.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 규정 (제5조)

. 수탁자 의무위반, 무능력이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위탁의 취소 규정 (제6조)

. 전수생의 자격, 지원 및 재정운영 규정 (제7조, 제8조)

. 지도감독 근거 규정 (제9조)

※ 총무위원회에 '96. 2. 29까지 심사보고토록 회부 ('96. 2. 22)

○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- '96. 2. 23

. 발 의 자 : 홍이식 의원 외 3명

. 제안이유

지방행정 기구의 개편 (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96호, '96.1.20)에 따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(개정. 1994. 9. 14. 1359호)를 군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. 주요골자

화순군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실과소 명칭 변경

- 총무위원회 소관실과 삭제 = 사회진흥과, 가정복지과
- 총무위원회 소관실과 신설 = 경영정책실, 민원봉사실
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 신설 =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
관리사업소
- 총무위원회 소관실과 명칭 변경 = 사회과 → 사회복지과
민방위과 → 민방위재난관리과

※ 의회운영위원회에 '96. 2. 29까지 심사보고토록 회부 ('96. 2. 23)

○ 먹는 샘물(생수) 개발사업 추진안 - '96. 2. 26

. 제안이유

최근 상수도 물에 대한 불신에 따라 생수를 음용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고 여기에 우리군은 산과 계곡이 깊은 청정지역으로 생수개발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 군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함

. 주요골자

- 공동수익사업으로 추진 (우리군 30%, 농협협의회 70%)
- 소요사업비 30억원 예상
- 물량산정:원수생산량 420T/일, 1일판매량 350T/일, 연간판매량126,000T/연
- 판매가격 및 비율
 - . 18ℓ - 2,250원 (50%)
 - . 1.8ℓ - 550원 (22%)
 - . 0.9ℓ - 240원 (6%)
 - . 0.5ℓ - 225원 (22%)
- 1차년도 당기순이익 : 591백만원
- 이익배당금 : 177.3백만원 (30%)
- 군투자 총수익 : 639.8백만원
 - . 이익 배당금 : 177.3백만원

- 수질개선부담금 : 462.5백만원
- $(4.625\text{백만원} \times 20\% \times \frac{50}{100}) = 462.5\text{백만원}$

- 판로대책

-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농협 판매망 활용
- 완벽한 청정 환경보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해외시장 개척

※ 총무위원회에 '96. 2. 29일까지 심사보고토록 회부 ('96. 2. 24)

□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

○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요망 진정 - '96. 2. 7

- 진정인 : 춘양면 석정리 80번지 석정사슴목장 문희남
- 진정요지

27년간 낙농 및 양육사업으로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우수 양육농장으로 발전 하였으나, 사슴가격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사업의 방향전환이 절박하므로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'95년과 '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승인신청을 하였던 바 행정당국의 사전 검토 미비로 농원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제외되고, 불충분한 사업자가 '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는 바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 유보 재심사를 요망

※ 산업.건설위원회에 '96. 2. 29일까지 조사보고토록 회부 ('96. 2. 15)

○ 고려시멘트 (석회석 채광) 토석채취 허가요망

- 민 원 인 : 광주.전남 레미콘공장 협동조합 - '96. 1. 30
- 광주.전남 시멘트 가공업 협동조합 - '96. 1. 27
- 고려시멘트 생존권 확보대책위원회 - '96. 1. 30
- 광주상공회의소 - '96. 2. 14

※ 군수에게 위사실 통보 ('96. 2. 12, '96. 2. 22)

○ 화순 - 능주간 확포장공사 편입 용지보상 관련 질의서 - '96. 1. 30

. 질 의 인 :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32 - 2

정성국 외 3명

. 질의내용

- 보상가격으로는 인근 주변에 대토를 구입할 수 없는데
- 보상심의 위원장으로써의 위상과 권위에 대하여
-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?
- 편입부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이유는?
- 축사, 계사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설치할때 들어가는 비용과 싹가는?

※ 이리국토관리청과 군수에게 이첩 ('96. 2. 12)

□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

○ '96. 1. 26일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

- .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→ 경영정책실장으로
- .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→ 민원봉사실장으로
- .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→ 사회복지과장으로
- . 박상수 사회복지과장 → 환경보호과장으로
- .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→ 지역경제과장으로
- .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→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
- . 임시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→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
- . 김재월 화순읍부읍장 → 화순군의회 전문위원으로
- . 서대식 위생계장 →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

□ 제 42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

-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-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
○ '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'96년도 군·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
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○ '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'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

(경영정책실, 기획실, 문화공보실, 민원봉사실, 내무과, 재무과, 지적과, 민방위재난관리과)

제 42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(안)

'96. 2. 26 ~ 3. 4 (8일간)

일 시	의 사 일 정	비 고
'96. 2. 26 (월) 10 : 00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회 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 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.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.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4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.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(경영정책실, 기획실, 문화공보실, 민원봉사실, 내무과, 재무과, 지적과, 민방위재난관리과) 	
'96. 2. 27 (화) 10 : 0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(사회복지과, 산업과, 산림과, 지역경제과, 건설과, 도시과) 	
'96. 2. 28 (수) 10 : 0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(환경보호과, 농촌지도소, 보건소, 온천개발사업소, 위생환경사업소, 휴양림관리사업소) 	

일 시	의 사 일 정	비 고
'96. 2. 29 (목) 10 : 00	1.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읍.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(화순읍, 한천면, 춘양면, 청풍면, 이양면)	○ 상임위원회 회 의 - 회부안건 심사
'96. 3. 1 (금)	휴 회	
'96. 3. 2 (토) 10 : 00	1.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(능주면, 도곡면, 도암면, 이서면)	
'96. 3. 3 (일)	휴 회	
'96. 3. 4 (월) 10 : 00	1.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(북면, 동북면, 남면, 동면) 2.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.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.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. 화순군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. '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	